

	<h2 style="margin: 0;">원격교육운영규정</h2>	규정번호	3-3-40
		제정일자	2020. 8. 7
		개정일자	2026. 3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학칙 제34조(수업)에 근거하여 원격 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.8.1., 2023.9.1., 2024.9.1.)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원격수업”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중간·기말 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·학습 활동의 70% 이상을 원격(비대면)의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을 말한다. 단, 강의실수업의 보조 수단(수업자료 탑재, 질의·응답, 토론 등)으로서 원격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 (개정 2025.9.1.)
2. “원격병행수업”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중간·기말 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·학습 활동의 70% 미만을 원격(비대면)의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을 말한다. (개정 2022.8.1., 2025.9.1.)
3. “블렌디드 러닝”이란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하여 일정 비율로 운영하는 수업방식을 말한다. (개정 2022.8.1., 2025.9.1.)
4. “플립드 러닝”이란 비대면으로 선행학습을 한 후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토론, 프로젝트, 협력학습 등을 진행하는 수업방식을 말한다. (개정 2025.9.1.)
5. “K-MOOC”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)를 말한다. (개정 2025.9.1.)

제3조(학점인정) ①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 단, 총장의 승인하에 학부(과)의 특성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다.

- ②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은 모두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.
- ③ K-MOOC 이수 시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발급받은 재학생에 한하여 과목당 1학점, 재학기간 중 최대 3학점까지 교양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4조(원격수업의 개설 및 운영)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일반적인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평점 및 학점제를 기본으로 한다.

- ② 원격수업의 이수 시간과 콘텐츠 진행(재생) 시간은 원격수업 운영 지침에 따르며 계절학기 등의 원격수업일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23.3.1.)
- ③ 본 대학에서 개설할 수 있는 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50% 이내로 개설 할 수 있다. 단,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원격수업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. (개정 2022.8.1., 2023.3.1., 2024.1.1.)
- ④ 삭제<2023.3.1.>
- ⑤ 유학생은 해당학년 또는 해당학기 이수학점 기준 비대면 비실시간 동영상으로 100% 구성된 교과목의 이수를 총 이수학점의 30%까지 허용한다. (개정 2025.9.1)

제4조2(원격수업 선정 기준) ① 삭제<2024.9.1.>

- ② 삭제<2024.9.1.>
- ③ 삭제<2024.9.1.>
- ④ 강의평가점수 하위자의 경우 원격수업 운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심

의를 통해 결정한다. (개정 2024.9.1.)

[본조신설 2023.3.1.]

제5조(시수인정, 강사료 및 담당교수의 임무) ①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교과에 대해 교원의 시수로 인정한다.

② 원격수업 교과목 담당교수는 토론, 과제, 퀴즈, 시험 등에 관한 수강생의 질의 및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대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23.3.1.)

가. 강의 설계, 강의자료 구성

나. 강의 동영상 제작 및 관리

다. 강의진행 및 수강생 관리와 평가

③ 원격수업에 대한 강사료 발생 시 강사료 지급에 대한 기준은 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른다. (개정 2023.3.1., 2025.9.1.)

제6조(출석관리) ① 원격수업의 출석 기준은 원격수업 운영 지침에 따르며,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출결처리는 원격강의시스템 또는 학습관리시스템(Learning Management system)에서 관리·운영한다. (개정 2023.3.1.)

③ 출결관리 시스템에서 대리출석 등 부정출석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7조(평가관리) ① 원격수업 이수에 대한 평가는 본 대학의 성적처리운영규정을 따른다. (개정 2023.3.1.)

② 학생의 성적평가(중간고사, 기말고사 등)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원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원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격강의시스템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처리하며, 평가근거자료는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 (개정 2023.3.1.)

④ 원격평가를 실시한 이후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로 평가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. (개정 2023.3.1.)

제7조2(강의평가) ① 삭제<2024.1.1>

②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 기준은 우리 대학 강의평가시행세칙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3.3.1.]

제8조(원격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)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품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·관리를 위해 교무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“원격교육관리위원회”를 구성한다. (개정 2023.3.1., 2023.9.1., 2024.9.1., 2025.9.1.)

② 원격수업의 콘텐츠는 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, 콘텐츠 내용의 30% 이상을 수정·보완하여야 하며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부서 및 교수 등에게 유지·수정·보완·재제작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(개정 2022.8.1., 2023.3.1., 2024.9.1.)

③ 제2항에서 정한 조치 권고를 받은 부서 및 교수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콘텐츠를 수정·보완·재제작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. (개정 2023.3.1., 2024.9.1.)

제9조(운영 방법) ① 원격수업에 의한 교과목 운영 및 학점취득 등은 본 대학의 원격강의시스템으로만 운영하여야 한다. (개정 2023.3.1.)

② 삭제<2023.3.1>

제10조(콘텐츠 개발 및 지원) ① 학교는 원격수업을 위한 원활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위해 시설, 기자재, 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해 개발된 콘텐츠를 본 대학의 원격수업 이외 K-MOOC 등 다른 곳에 등재하

고자 할 경우,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22.8.1., 2023.3.1.)

③ 콘텐츠는 제8조에서 정한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. (개정 2023.3.1., 2024.09.01)

④ 콘텐츠를 개발·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사용은 허용하지 않으며,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 교수에게 있다.

⑤ 콘텐츠 제작 시 소라(Sora), Synthesia 등의 AI기반 자동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하며, 동영상 콘텐츠 내에는 반드시 교수자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야한다. 사회복지 표준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콘텐츠는 예외로 한다. (개정 2024.9.1., 2025.3.1., 2025.9.1.)

제11조(원격수업의 관리) ① 원격수업과 관련한 교과목의 개설 및 성적평가, 학사운영 등의 관리는 교무학생처에서 주관하며, 기타사항은 본 대학의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다. (개정 2023.3.1.)

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원격수업을 위한 웹사이트의 관리, 콘텐츠 관리, LMS 온라인 관리, 교수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교무학생처 산하 ‘AID교수학습지원센터’에서 주관한다. (개정 2023.9.1., 2025.3.1., 2026.3.1.)

제12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부개정 적용례) 이 규정의 규정명을 ‘원격수업운영규정’에서 ‘원격교육운영규정’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제 4조 5항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